

성폭력 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박형민*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자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 또는 선택의 순간 고려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회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 2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자료 중 피해자 선택을 나타내는 단서들을 추출하여 개방코딩한 후, 이를 추상화하여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법은 ‘술을 통한 상호작용’, ‘놀이 등을 통한 상호작용’, ‘유흥업소 여성 선택’, ‘피해자 집 침입’, ‘무작위 선택’으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선택의 계기는 외모나 옷차림 등과 같은 피해자의 특성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피해 여성이 혼자 있는 상황, 침입하기 용이한 상황,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황 등 범행당시의 상황에 따라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2차 피해중 하나인 성폭력 발생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비판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성폭력 범죄 예방 정책,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성폭력 범죄자, 피해자 선택, 피해자 특성, 상황적 특성, 피해자 책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 서론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범죄의 1차적 피해와 더불어 피해 이후 오랜 기간 정서적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과 중요성이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며, 강도 등의 다른 형태의 범죄들도 성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도 관련이 있다(김은경·이나영, 2015).

대다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의 특성 및 피해 특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현경, 2015; 공미혜, 2006; 광민영, 2007; 주소희, 2010; 문현주, 2015; 김지혜·김희주, 2017; 이유진, 2013). 이 같은 연구들은 주된 초점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와 피해자에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보다는 피해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또 한가지 주된 흐름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근거로 한 법·제도적 대책에 대한 연구들이다(여성가족부, 2016; 홍영오 외, 2015; 김승권 외, 2013; 장다혜, 2012; 김태명, 2011). 이러한 연구 역시 성폭력 범죄의 피해 실태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부 가해자 특성을 다룬 연구에서도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범죄경력 등을 다루는 데 그치거나(전영실 외, 2007), 범죄자의 범행동기의 유형화(허경미, 2009; 이동명·정규진, 2013; 고선영 외, 2004)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선택의 우선성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죄자의 심리적 동기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주된 내용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 또는 선택의 순간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즉, ‘실제 범죄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대답은 성폭력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성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들 중 범죄자의 피해자 선택을 주제로 삼은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다만 성폭력 범죄자의 유형 구분 또는 동기 구분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맥락을 유추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론을 통해 범죄자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피해자를 선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성범죄 발생 지역의 공간적 특성 분석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1. 성폭력 범죄자의 유형

허경미(2009)는 강간범의 성적 태도 및 심리를 폭력지향형(power assertive), 폭력강화형(power reassurance), 분노보복형(anger retaliation), 분노가학형(anger sadistic)으로 구분하고, ‘강간은 범인의 사랑을 구하는 방식의 한계이며, 사랑을 구하는 인간관계적인 기술의 부족 혹은 상실의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강간범은 폭력을 매개로 성적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범죄자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폭력적 요소가 가미된 범죄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간범들은 특히 힘(power), 분노(anger), 성욕(sexuality)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강간범죄자들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대상(다시말하면 성적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을 피해자로 선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동명·정규진(2013)은 성폭력 범죄자를 남성확인형, 남성과시형, 분노보복형, 분노흥분형으로 구분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여성에게 자신의 남성성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남성 확인형), ‘남성다움 또는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기 위해’(남성과시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또는 ‘자신이 항상 두려워하는 대상이 존재하며 그 대상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다니거나’(분노보복형),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강간당하고 지배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확신하여’(분노흥분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역시 성폭력 범죄자는 자신의 환상 또는 왜곡된 인지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며, 이를

통해 형성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선영 외(2004)에서도 성범죄자를 분노형, 권력형, 가학성, 기회주의적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에 대한 분노’(분노형), ‘상대방에게 자기의 성적인 능력 및 지배성을 증명함’(권력형) 등이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을 목표물로 삼아 미리 선택하고 준비한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단, 기회주의적 성범죄자들은 재산범죄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한다¹⁾.

성폭력 범죄자의 유형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들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동기와 목표가 있으며, 이들은 이를 위해 피해자를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목표로 하는 피해자의 특성이 있으며, 범죄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피해자를 미리 물색하여 접근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월링(Worling, 2001)은 성범죄자에 대한 유형구분을 위해 신체적 학대의 역사, 부모의 혼인 여부, 범죄자의 거주지, 그리고 범죄경력 등 범죄자의 특성과 함께 피해자 연령, 피해자 성별 등과 같은 피해자 특성을 요인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범죄자 특성은 유형구분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피해자 특성은 유형구분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범죄자 유형론은 범죄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동기 또는 행위에 따른 이론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폭력 피해자의 유형

성폭력 피해자의 유형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가해자들이 선택한 피해자들의 특성

1) 이 연구에서는 기회주의적 성범죄자를 일종의 잔여범주처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성범죄자 위험성 분류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선영 외, 2004).

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나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굿윌과 앨리슨(Goodwill & Alison, 2007)은 85 사례의 강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해자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는 자신과 유사한 사회적, 연령적 특성을 가진 피해자를 선택하지만, 낯선 사람들에 대한 공격에서는 이러한 안정성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내린다. 구웨이 외(Guay, et al., 2001)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웨이 외(2001)는 178명의 연쇄 성폭력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자-피해자 관계 등으로 구분된 6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누고, 이들이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 피해자 유형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살펴 보았는데, 친숙한 관계의 피해자들이 선택될 때는 범죄자 선택이 안정적이지만, 낯선 피해자들이 선택될 경우 이러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다프네와 프로브(Daphne & Proeve, 2010) 역시 128명의 성인 남성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연쇄 성범죄자들의 피해자 유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연령 영역에서 48.0%, 성별 영역에서 22.0%,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25.8%가 이 질적인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데슬로리어스-바린과 보르가드(Deslauriers-Varin & Beauregard, 2010)는 361건의 성 범죄를 저지른 72명의 연쇄 성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 선정 과정을 살펴본 결과, 많은 사례에서 범행 대상 전환이 발견되었고, 72명의 범죄자들 중 절반이 적어도 한번은 대상전환이 일어났음을 발견하였다.

피해자 유형론에서 나타난 피해자 선택의 비일관성은, 범죄자들이 명확히 목표로 삼은 피해자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범행 현장에서의 상황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피해자 선택의 공간적·환경적 특성

레보초와 실바(Rebocho & Silva, 2014)는 ‘성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는 환경적, 상황적 요인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개인적 요인들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고 비판하며, 성 범죄자의 사냥 행동과 사냥 과정, 대상 선택에서의 지리적 의사 결정,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영향력 등을 통해 범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터와 라킨(Canter & Larkin, 1993)의 연구를 이해할 수 있다. 칸터와 라킨(Canter & Larkin, 1993)은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45명의 영국 남성 성범죄자들의 공간 활동을 조사한 결과 목표물의 선택은 물리적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룬트리간 외(Lundrigan, et al., 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76명의 뉴질랜드 연쇄 성 범죄자들의 표본에서 공간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였다.

한편 보르가드와 레보초(Beauregard & Rebocho, 2010)는 범죄자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강간 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결정은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상 선택에서는 다양성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스티븐슨(Stevens, 1994)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피해자의 취약성이었다. 스티븐슨(Stevens, 1994)은 성범죄로 수감된 61명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여성들이었다.

Ⅲ. 자료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3년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Ⅱ) : 연쇄 성폭력』(박형민 외, 2013) 연구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연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면접 자료 중 피해자 선택에 관한 부분을 재정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위의 연구에서 면접 대상자는 교정본부에서는 선별하였는데, 일선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총 11개 기관을 선정한 후 각 기관별 2명씩의 면접대상자를 추천한 것이다. 면접대상자는 2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 중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이었다. 면접은 일선 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담실, 변호인접견실, 회의실 등의 장소에

서 이루어 졌으며, 1인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의 면접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때 연구진은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2. 자료의 일반적 특성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는 30대(8명)와 40대(11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20대가 2명, 50대가 1명 포함되어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의 직업은 범행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이 있더라도 일용직이나 단순 서비스직에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면접대상자의 직업분포는 성폭력 범죄자의 일반적인 직업분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성폭력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일정부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면접조사에서 수집된 사례는 연쇄 성폭력 범죄자 일반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1〉 면접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사례	나이	직업	학력	죄명
〈사례 1〉	40세	무직	고등학교중퇴	강제추행
〈사례 2〉	35세	무직	중학교 졸업	강간, 강제추행
〈사례 3〉	46세	술집경영	중학교중퇴	강간
〈사례 4〉	38세	농부 / 일용직	고등학교졸업	강간
〈사례 5〉	42세	중화요리사	고등학교졸업	특수강도강간
〈사례 6〉	47세	아동복 제작	고등학교 졸업	강간미수
〈사례 7〉	32세	공익근무요원	대학교 중퇴	강간
〈사례 8〉	42세	무직 / 판매업(생활용품)	고등학교중퇴	강간
〈사례 9〉	37세	무직	대학교 재학	강도강간
〈사례 10〉	31세	학생 / 무직 / 보험설계사 / 주점운영	대학교 중퇴	강간미수
〈사례 11〉	46세	일용직 / 과일장사	고등학교졸업	강간
〈사례 12〉	36세	회사원	고등학교졸업	강도강간
〈사례 13〉	40세	무직	고등학교졸업	특수강도강간
〈사례 14〉	29세	당구장 아르바이트, 중국집 배달원 / 택시 기사	고등학교졸업	강제추행
〈사례 15〉	48세	무직	고등학교졸업	강간미수

사례	나이	직업	학력	죄명
〈사례 16〉	30세	식품담당 직원	전문대학교 중퇴	강제추행
〈사례 17〉	39세	무직	대학교 중퇴	강제추행
〈사례 18〉	44세	포장마차운영	고등학교 중퇴	강간
〈사례 19〉	21세	피자배달과 퀵서비스	고등학교 중퇴	강간
〈사례 20〉	54세	무직	고등학교 졸업	성폭력특별법
〈사례 21〉	44세	전기공 / 일용직	중학교 졸업	강제추행
〈사례 22〉	46세	유통업체 종업원/ 간판가게 종업원	중학교 졸업	강간

IV. 분석 결과

면접 내용 중 피해자 선택을 나타내는 단서들을 추출하여 개방코딩한 후, 이를 추상화하여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해자 선택 및 접근 방법

피해자 선택	사례	접근 방법
같이 술을 먹다가 범행	1, 5, 6, 10, 11, 18, 21	술을 통한 상호작용
음식과 용돈을 주고 집으로 유인	2	놀이 등을 통한 상호작용
채팅을 하다가 집으로 유인	14, 19	
불특정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도와주는 학생에게 범행	3	
노래방 도우미 대상 범행	16, 18	유흥업소 여성 선택
술집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행	4, 12, 15, 21	피해자 집 침입
문이 열려 있는 집에 침입	20	
지나가는 여성을 무작위로 선택	7, 9	무작위 선택
길을 걷다가 뒤따라가서 범행	8, 13, 22	
혼자 있는 피해자 선택	20, 21	
지하철에서 즉흥적으로 범행	17	

1. 술을 통한 상호작용

술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접근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사례들이 많았으며 음주라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할 수 있었다. 이때 범죄자는 음주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계심을 감소시킨 후 범행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례들도 있었다.

(그럼 두건 다 사귀시던 분이신가요?) 첫 번째는 사귀던 사람이구요 저랑 5살 차이났습니다.

(무슨 직장이셨어요?) 일용직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했었고 직장 그만두면서 올라와서 약간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그 여자분을 만나고... 나중에 그... 친구인데 친구하고 자주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구속되고나서 나중에 들은 건데 그 고소할 당시에 형부하고 고소를 했는데요 제가 그... 그냥 저는 강간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거였고 평상시 술 한잔 먹고 모텔에서 같이 있다가 여자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 했는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억압했다는 건 아니구요, 싫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그게 강간이다 해서

(여자분 평소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소처럼 술한잔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친구가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친구 남자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말 하다가 기분이 안좋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억압한게 아니라 하다보니 관계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사례 11>

다른 사례들은 이전에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으나, 음주 등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사례들이다. 이들이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 등을 미리 가지고 있었고, 이 대상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기회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음주 상황에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피해자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성폭력의 기회만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20대에도 술마시다?) 네 애들이랑 술마시다 집에가는길에 길거리에서

(이때는 자주 만나는 친구분이셨나요?) 학교친구 맨날 술먹고 하는친구

(그럼 여럿이서 술마시다가 같은방향 친구랑 두분이서 가다가?) 네.

(여자분을 평소에 좋아하시던 분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얼굴 못생겼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술만 먹으면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랑 평소에 스킨십같은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못생겨서 손도 안잡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술만 먹으면 그런 거 같습니다.

<사례 5>

(피해자는 어떤 분이셨어요?) 동네... 동네 사람이었어요. 동네사람인데 그때 그 당시에 22인가.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저도 술먹고 이쁜여자가 보이면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거는데 저분에게 말을 하면 될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있길래 한번 던져보고 되면 가고 안되는 안되는거니까

(평소에는 안하셨는데 그때 한 이유는?) 술을 먹으면 일단 취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 본 겁니다. 싫다면 마는 거고 제가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을 했었는데 응하니까

(그분이 매력적이셨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두침침한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했더라면 응해서 했는데

<사례 21>

2. 놀이 등을 통한 상호작용

놀이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 범죄자들은 대상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외모나 성적 매력, 혹은 복수나 분노라기보다는 단지 범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취약성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례 2>의 경우 미성년자를 놀이와 음식으로 유인하여 성폭력 범조를 저지른 사례인데, 특정한 피해자를 미리 정하고 접근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제안에 응하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행한 것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제공하는 이득을 받아들인 피해자들을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는 가출한 애들이

(그럼 파트너는 몇 살이셨는데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그러면 18살 때 처음 동성애를 아셨고 29살 때 처음 체포되셨는데 그 사이 11년엔 경험이 없으셨구요?) 계속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떻게 사귀셨나요?) pc방에서 게임하면서도 사귀고 고기같은것도 사주고... 어린이가 우리집에서 자고 매일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동성애자였던가요 아니면 돈을 주니까였던가요?) 나가 돈을 주니까..

(pc방에 학생 만나고?) 네 계속 꾸질꾸질하고 pc방에서 애들 만나고 애들 뭐사주고... 지들이 나중엔 먼저 전화합니다.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이 집으로 부르신 거예요?) 네. 먼저 전화를해요 그럼 제가 오라고하고 애들도 뭐 먹고 싶다고 하고 치킨 사 달라하고

(그럼 애 입장에서는 억지로 한 건 아니네요?) 네. 돈좀 쥐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하나까..

<사례 2>

<사례 14>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처음 만날 때는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인터넷 메신저들 통해 접촉이 있었던 여성들 중 취약한 대상을 선택한 것이었다. 범죄자는 피해자에 대해 외모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모자란다’는 표현으로 나타나듯이 쉽게 접근하고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어떤 분이셨어요?) 동네 후배요

(몇 살 차이셨죠?) 4살차이요

(그럼 15살?) 네

(원래 알던 친구였어요?) 아노 알던 친구는 아니었구요. 그 당시에 메신저가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동생이 친구목록을 보내줬는데 자동으로 피해자가 뜨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보니까

(동네친구인건 어떻게 아셨어요?) 후배가 친구목록을 줬는데 중학교 후배들 이런 식으로 그룹이 되있더라구요.

(그럼 처음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신건가요?) 네

(그럼 바로 만났나요, 아니면 채팅을 하다가 만나게 된 시간이 좀 있었나요?) 처음에는 좀 일부러 어디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건데.... 뭔가 제가 친구목록을 받으면 뜰거

아니예요 근데 친구인줄 알고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빌미로 만나서 한번 하고 일주일 뒤에 또 만나서 하고 그래서 2번 그렇게 반 강제적으로 한건데 그러고 나서 안 만났어요

(그럼 채팅을 하신 건 몇 시쯤?) 오후 한 2시에서 4시 사이?

(그럼 불러낸 거는요?) 한 5시 정도?

(불러낸 뒤에는 바로 하신건가요?) 만나서 그런 실수를 핑계삼아서 뭐라고 하면서 건다보니까 저희 동네 폐허가 된 공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그럼 5시 쯤에 어디에서 만났어요?) 똑방길

(그냥 카페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시골이라 똑방길에서 만났어요

(그럼 폐허공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요?) 200m정도

(그럼 순순히 가던가요?) 얘기하면서 가서

(그럼 만난 거는 두 분이서 만난 거예요?) 네

(사실 그때도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있던 거죠?) 네 그렇죠

(그 때 강간시도를 할 때 큰 반항을 안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반응을 했나요?) 그냥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저항을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한거 같았는데

(그럼 소리도 안 지르고 밀치지도 않고 몸부림도 안치고 그랬나요?) 그냥 좀... 움츠려 들었던 거 같아요

(혹시 협박은 없으셨구요?) 아뇨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던가 겁을 준건 없었구요 처음 만났을 때 온라인상에서 만났을 때 그것만 뭐라 했고 그 이후로는

(그럼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하셨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기만 하고 말은 안한거같은데

(공장으로 따라가고 별로 말은 안하시구요?) 문이 닫혀있었는데 제가 먼저 넘어가서 넘어오라니까 그냥 넘어오길래 잡아준 기억이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거 같아요

(그래도 15살이면 대충은 알텐데?) **애가 좀 뭐라 그럴까... 장애는 아닌데 좀 모자랐던 거 같아요**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제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아이디를 지우고 차단하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후배 아이디로 들어가서 내가 다 설명하고 너는 모르는 척 하고 있어라 하고 그 후배인척 하고 얘기를 했죠 아무 일도 없었냐 그런 식으로 말하다가 다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똑방길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제 후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오니까 겁먹고 따라오

라니까 똑같이 따라오고

(그래도 2번째는 알았을 거아니예요? 그래도 순순히 오던가요?) 네. 제가 말했듯이 애가 좀 모자른 거 같아서... 제 친구 후배 아이드로 했다는 것은 2번째 하고 나서는 그걸 알았으니까 이쁜 애도 아니었고 안 만났거든요
(그럼 처음에 불러야겠다 한 건 얼굴모르고?) 네 모르고

<사례 14>

<사례 19>의 경우도 위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다. 이 사례의 범죄자도 피해자에 대해서 성적으로 매력을 느꼈다기 보다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피해자를 선택한 근거가 된 것이다. ‘이쁜 건 아닌데 착한 것 같아서’라는 표현이 그것인데, 여기서 착하다는 표현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표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첫 번째 사건 피해자가 어떤 분이세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 제가 19살이면 15살 14살...

(중학교 2학년) 네

(이 중학교 2학년 이친구는 알던 친구인가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되서 서로 번호 알게되고 연락해서 만나고 만나고 나서 밥먹기로해서 만났는데 이제 밥먹고 나서 이제 술도 먹고싶어해서 술까지 먹었는데 저도 모르게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하게됐어요 그렇게 한게 첫 번째이구요

(그러면 모텔로 갈 때 강제로 간 건가요?) 강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따라왔어요

(처음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셨고, 일단 같은 동네인가요?) 서울은 잘 모르겠는데요 금촌구면 옆에 양서구 보통 옆동네라고 보면 되요

(처음에 만나서 밥먹기로...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요. 그리 이쁜 건 아닌데 착한 거 같아서

(성관계 때문에 만나신거네요?) 그런 게 없지않아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만난 건데 한번 하고나니까 하고 싶어서 만나고

<사례 19>

<사례 3>의 경우도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이 사례의 범

죄자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취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를 들어주는 학생을 납치하거나, 어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속여 납치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때에도 범죄자가 이용한 것은 피해자의 취약성이었으며, 이 이외에 다른 대상의 특성이 아니었다.

(그럼 강간하신분이 피해자가 아시던분이신가요?) 아뇨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뇨 **특정인. 학생들만**

(주로 어디서 납치를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일이 있고...

(학교라고하면 학교 안에서?) 네... 학교로 들어가서

(애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냥 데려와야지.....

(그럼 여학생이 여러 명인데 어떻게 선택하세요?) **그냥 사람 가리는 건 없고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면.... 도와달라 하고 해서 하거나 보호자인 척하고 학생 누구 찾아온 거처럼하고... 아니면 선생님인 것처럼 하고...**

(누군가 미리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충동적인 걸 해소하려고 했을 뿐이지 사람을 가리고 그런 건...

<사례 3>

3. 유흥업소 여성 선택

유흥업소 여성들이 피해자였던 사례들에서도 범죄자가 구체적인 유형의 피해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만나게 된 업소의 여성이 우연히 피해자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어떤 분이세요?) 노래방에서 만난 여잔데 불렀는데 2차를 나가서 여자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할려다가... 하려갔는데 돈을 줘야되는데 하지를 못해서 돈을 못준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칼들도 했다 강제로 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관계는 안하신거네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못해서 실갱이가 벌어진 거죠. 막 싸우고...

(선생님은 못 했으니까 돈 못 준다, 그 쪽은 그래도 돈 줘야되다?) 네 그런 걸 몇 번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신고를 안 하더라구요. 거기서 좀. 그랬습니다. 거기서 자기

돈 5000원 들고 갔다고 강도까지 붙었습니다. 안 들고 갔는데

(그 앞에는?)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비슷한가요?) 그건 제가 많이 잘못했는데 이것도 노래방인데 화장실에 가는 골목이 있는데 계속 약을 올리길래 화장실 뒤따라가서 빈병으로 위협만 했는데 그 사람이 손으로 저항하다가 손을 살짝 다쳐서 강간상해 그걸로.. 그걸로 3년에 5년 집행유예받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뇨 저보나 나이도 한참 많았고... 그 사람보다 더 젊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술만 마시면 그런 게 있는거 같습니다. 계기라고 하면 그 여자가 저를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딱 못 봐야버리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을텐데 간을 보면서 허락을 안 하니까 거기서 화가 난..

<사례 16>

(다른 사건은?) 노래방아가씨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건 같이 술하나 먹고 하다 보니... 내가 나도 어릴 때 평범했거든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놀다보니 노래방에서 하나 놀다보니 여자가 돈 내준다고 노래부르자고 해서 같이 놀다보니까 내가 하두 여자가 싸가지가 없어서 때렸는데 밖에 나가서 건달을 데려오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데 가자 해서 같이 술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가서 마시자해서 그 가게를 갔더니 문을 딱 닫더라구요 그 여자는 없고 그래서 그냥 다른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노래를 안 부르길래 몇 대 때리고 해서 사장부르고 하다가 보니까 사장도 아는사람이고 해서 술한잔 먹으면서 좋게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여자 집도 가는 길이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 술한잔 먹자해서 같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침이니까 골목으로 가자 그래가꼬 가자 카는데 그때서야 여자가 지한테 해코지할까봐 이길 아니잖아 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길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서 쪽팔려 그런 건데 여자가 막 소리지리고 하니까 화가나가 몇 대 때렸습니다. (그건 강간미수인가요?) 아닙니다. 강간 했습니다. 하지만 난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 그런데 막 울고불고하니까 이미 판은 벌어져버렸고 나도 그냥 니 한번 욕먹어봐라 해서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례 18>

4. 피해자 집 침입

<사례 4>, <사례 12>, <사례 15>는 술을 먹고 열려있는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술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침입한 집들도 문이 열려 있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들이 피해자를 선택하게 된 주요한 요인은 ‘문이 열려 있었다’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사례 1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혼자 있었다’는 상황이었다.

(그럼 3,4번째는 어떻게 그 집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는 4번째는 용역사무실 다니면서 후배 놈이 지금 현재죠 이때 아는 사람이라 다투고 생일이었었나? 기분이 좋은 날이라서 같이 술 먹자고... 거기서 친구랑 후배하고 그때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먹고 여튼 애매모호한 그... 좀 그랬어요

(제가 아까 여쭙본 거는 그 집을 어떤 집을 가셨냐는 거죠 왜 하필 그 집인지?) 4번째는 제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가가지고... 3번째는 문이 열려가지고 그.. 들어간거고

(그러면 3번째는 문 열린 집에 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들어가서서 뭔가 범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신 거예요?) 아뇨 그때도 마찬가지로 술을 먹고 들어간 건데 문이 열려있으니까 저도 모르지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그 길을 계속 간거죠

<사례 4>

(사건에 대한 설명?) 제가 회식하고 만취하고 집에 오는길에 피해자의 집에서 자는 상태에서 잡혀서 현장검거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눈떠보니까 묶여있었고, 그래서 강간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집 문 앞에 핸드백이 있어서 강도강간으로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술을 많이 먹는 거는 둘째치고.... 사건이라는데 제가 긴장을 풀리면 몸이 제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사례 12>

(그럼 술 드시고 우발적으로 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2km 떨어졌다고 했는데?) 걸어서 1시간 걸려버리잖아요 근데 정확히 학교가 4km라고했는데 그 중간이니까 대충 그 정도라는 거지 동네 술파는 집이 없다니까요. 시골에 있어도 일찍 닫아버리니

까 그니까 글로 술 마시러 나가는 거지. 뭐 범행내용을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강간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억압해두고 강제로 하는 건데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럼 강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 생각이 드신 건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해 말어 하다가 내가 내 자신을 놔버린거같아 나도 맨 정신에는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 알아.... 내가 정신이 있겠어요? 그 때 술 마시고.

(한 번이면 이해가 되는데 2번 더 있으시다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총 2번입니다. 근데 있는사건이 추가돼서 3번이 돼버린 거여 전에 있던 걸 다시 신고해서 추가가 된거지 그렇게 된거여. 쉽게 말하면 이번 사건이 절도로 들어왔는데 그 사건이 그 사건이여 사건이 좀 겁니다.

(그때 그 분은 혼자 계셨던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은 안하셨나요?) 그건 잘 모르죠. 취했으니까

(그럼 혼자라는 건 알고 있었고 우발적으로 생각이 났다?) 네

(그럼 그분이랑 알고지낸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럼 그분의 상황은 선생님이 잘 아시고 있겠네요?) 대충 알았죠.

(혹시 그분을 좋아하셨나요?) 그런 거 없다니깐요. 알고만 있지 좋아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례 15>

<사례 20> 역시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성적으로 끌렸다’고 표현하였으나, 실제로는 ‘열린 문’과 ‘혼자 있는 상황’이 중요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당시 여학생을 봤을 때 충동이 생기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정한 것보다 사람들이 없고 혼자 있어서 갑자기

(예쁘거나 그런 것보다는?) 성적으로 끌렸어요.

(매력이 아니라?) 네. 혼자 있다 보니 자제를 하지 못하고 충동이 생겼습니다.

(2번째는 어떤 사건인가요?) 형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김스를 한 상태에서 남에 집에 칼 들고 들어가서... 내가 생각해도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빼앗지 않았어요.

(왜 돈은 빼앗지 않았나요?) 그때까지는 돈에 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돈보다는 성적인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했어요.

(그 집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여름에 문이 열려있었고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칼은?) 그 집에 들어가 보니 부엌에 칼이 있어서

(그 집이 일반주택이었나요?) 네.

(1층?) 네

(마찬가지로 여자 분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네. 특별하진 않고 단순하게 충동적으로. 무조건 충동적으로

<사례 20>

5. 무작위 선택

<사례 7>은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범죄였는데, 이 사례의 범죄자는 피해자의 외모는 선택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면 피해자를 처음 본곳은 어디세요?) 그게 그때... 큰 길은 아니었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취해서 그런 중에 택시에서 내린 여성이 골목으로 가니까 그분 앞쪽으로 가서 차를 세워두고 그분은 모르죠 앞에 세운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살짝 지나가는 중에 내려서 덮치니까... 당황하죠 그래서 그분을 태워서 조금 더 가서 공터같은 그런 곳으로 주차를 하고

(그럼 그 동네가 선생님 잘 아시는 동네예요?) 처음가보는 동네.

(그러면 피해자를 저 사람이다 라고 선택하게 된 계기는?)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그... 제가 범행을 마음에 먹고 따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가서 잠시만요 길좀 물을께요 하고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는데 오히려 제가 범행을 하려고했던 여자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되게 미인이셨는데 제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인이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 피해자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지금 의아한게 그분이 그냥 특별히 웃을 아하게 입거나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청바지에 그냥... 저희 어머니가 치마를 안 입으시거든요. 남성적인 스타일이신데

(일단 그분을 선택하셨을 때 그분의 외모가 파악이 되나요?) 아뇨 파악이 안되죠 몸매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그럼 가다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사람의 상황이?) 실제로 제가 이성을 만날 때는 몸매가 안 되더라도 외모를 따졌는데 그때는 그런 걸 일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기준이라기 보다는 절대 좀... 오히려 약해보이는 사람은... 나이가 저보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분들은 저보다 다들 연상이시고 신체 건강하신 분들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하고 여성적인 분들은 피했었던 거 같아요

<사례 7>

<사례 9>의 범죄자 역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외모는 확인하지 않고 공격을 하었다고 진술했었다. 이 사례의 범죄자는 만일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안들었어도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범죄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겠다’는 상황이었다.

(그 피해자를 얘기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선생님이 보시기에 매력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었죠 나이도 비슷했고 솔직히 외모는 자세히 못봤어요. 그냥 전체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얼굴같은 건 확인하지도 않았구요 그냥 목소리는 들리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겠지 스스로 하는거죠 나 스스로

(혹시 그분이 선생님이 보기에 외모가 마음이 안 들거나 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했겠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피해자 외모는 상관이 없었고 선생님이 태운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내요?) 처음이라서 더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차라리 성폭행을 하지 않고 돈만 뺏은 적이 있으면 달랐을 수도 있을텐데

(애초에 그분은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일부러 고른 거는 아니구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로 주행을 하다가 경로를 예측을 해 본 거죠 여기 저기로 갈 수 있다 생각되면 쫓아가다가 예측대로 이동을 하면 인적을 하고 한 거죠 처음 피해자를 납치하는 거를 일주일정도 걸렸어요

(혼자 다니는 분이 처음은 아니셨을 텐데?) 일단 서로 간에 범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조심한 거죠 첫날 시작날은 돌아다니다 못하고 내일은 마음 굳게 먹고 해보자 하고 다음날 막상 나가면 또 주변 환경 핑계로 반복하다 그날은 어떻게 마침 여기

만큼은 사람이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냥 단행한거죠 제가 항상 운전
을 했었고 공범은 뒤에 타다가 제가 앞에 탁 막아두고 뒤에서 내려서 붙잡았는데 그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소리지르고 태우기까지 힘들었죠. 태우면 바로 출발해야 되는
데 내려서 같이 어거지로 밀어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사건장소가 아는 동네였나요?) 아뇨 모르는 동네. 그냥 차 있으니까 배회한
거예요. 목적없이. 우리 사는 곳이랑 좀 떨어진 모르는 동네 배회하는 거죠. 그냥 2,3
바퀴 돌면 대충 파악할 수 있으니

<사례 9>

<사례 8>의 범죄자는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기는 했으
나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범죄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적인 유혹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인 충동이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회가 발생하자 충동이 강해진 것이
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사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그게 아마... 자
주 가는 동네 버스정류장 아니면 등하교 하는 길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시는 분이었나요?) 아뇨. 그때도 제가 아버지한테 폭력적으로 많이 맞고 그렇게
있어서 그 상황에서도 91년도인가 어머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셔서 주사가 좀 있으서
가지고 그런 게 그 당시에 막상 일도 그만 뒀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을 그
만두고서 집에 있었는데 제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랑 티격대격했었고

(혹시 그 여자가 매력에 있던가요?) 글썄요 물론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창가 여자도 있을 거고 했을 텐데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
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우습겠지만 그때 따라가면서도 많이 망설였거든요 따라가
서 이 여자를 강제로 범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실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엔 담배를
처음 배우듯이 달라진 거죠

(그럼 그 여자 분이 다른 여성과 다르게 보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런 건 없었구요.
사실 제가 쫓아간 걸보면 외모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인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가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냥 따라가신 겁니
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언제 생각을 하신건가요?) 따라가다가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는 걸 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유혹이 강해진 거죠

(2번째 피해자도 매력적이었던 거 같아요?)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야 정류장에서 딱 눈에 보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2번째도 그런 분을 만날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사는 힘들 상황이었고 동네 배회하다보니까 우연히 발견해서

(혹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누가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있었나요?) 있었죠. 한 10번 정도. 물론 더 될 수도 있구요

(그러면 이 10번 정도 이상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신 건데 여자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그 여자집에 가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때 여자에 대한 증오감도 많이 생겼던 거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기에는 어릴 때에도 한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어머님통해서 들었는데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런 처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자에대한 증오감같은 게 생겨서

(그럼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나보네요?) 그런 건 아닌 거 같구요,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제가 제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례 8>

<사례 22>의 범죄자 역시 피해자를 쫓아간 이유가 ‘혼자간다’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외모적으로만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어디였어요? 처음 본 곳이?) 주택가 골목길이었어요.

(그럼 여자 분이 혼자 가는걸 보고 쫓으신 거예요?) 네

(그럼 주택가 골목길이 큰 곳인가요 아니면 한적한 곳인가요?) 아뇨 태백 시내입니다.

(버스정류장 근처?) 태백이라는게 대도시랑 달라서 중심시라도 2차선밖에 안되거든요

(선생님은 어디 가시던 중이었어요?) 저는 뭐 집으로. 제가 살던 월세집으로

(몇 시 쫓이었어요?) 제가 그날 pc방에서 게임 좀 하고 집에 자러갈라고 하는 길이니 까 11시는 넘었을겁니다.

(사람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골목에는 사람이 없죠

(얼마정도 쫓아가셨어요?) 거리는 얼마 안 됐는데요, 100m도 안된 거 같습니다.

(어디까지 쫓아 가신 거예요?) 피해자 집까지

(집에 들어가시는걸 보고 쫓아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럼 그 분이 다른 남자분이, 가족들이 있으면 어찌려고 했어요?) 그때 뭐... 아까도 말했듯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도망가지 어떻하겠습니까

(집 구조가 어떤 구조였나요?) 원룸인데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3층인가 그랬던 거 같습니다.

(여자 분이 무서워하지 않으시던가요?) 조금 거리를 두고 갔죠

(그럼 3층으로 간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가 12시쯤 됐으니까 불 켜진 집으로

(그럼 문은?) 그때 여자가 술이 약간 된 거 같더라구요 만취는 아니고, 그래서 문을 제대로 안 잠근 거 같더라구요

(그럼 그 분은... 왜 하필 그분을 쫓아가셨을까요?) 뭐 혼자가니까

(혹시 그분이 선생님 마음에 들거나 매력이 있거나 해서 쫓아갔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럼 여자분의 외모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보통편이었고 날씬한 편도 아니었고

(쫓아갈 때 외모는 확인하고 가신 건가요?) 그냥 혼자가니까

<사례 22>

<사례 13>는 강도강간 범죄 사례로, 피해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유해 보이면서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시간의 특성상 구체적인 외모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과 혼자 산다는 상황적인 요인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 사례의 범죄자 역시 성적인 충동이 기회를 통해 강해졌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침입을 통해 들만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성폭력의 충동이 강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사건내용을 좀..)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목적으로 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고라던가 이런 거를 하려고 수치심을 쥐서 신고를 막아보려고 강간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얼마나 뺏으셨나요?) 현금으로는.... 건수는 4건인데 3건은 피해액이 없었구요, 1건만 1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공소장에서내린 피해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이 안되고 핸드폰 그런 거.. 핸드폰 같은 것도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강도로...

(그러면 들어가신 게 집이에요 아파트예요 다세대예요?) 한 군데는.... 일산은 차. 차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여자를 상대 한 거구요 빌라 주차장. 연의동도 마찬가지로

고 주차.. 집 앞에.. 빌라주차장. 장충동만 집.

(집은 일반 주택인가요?) 그것도 빌라

(몇 층?) 1층이요

(빌라는 왜 하필 그 집을 선택하셨나요?) 딱히 빌라라고 짚은 것 아니구요, 장충동 그 여자를 뒤 따라 갔거든요 그 여자를 쫓아 가다보니

(몇 시쯤 인가요?) 되게 늦은 시간 이었어요

(그 사람을 기다린 건가요?) 나이라도 좀 젊었구요 힘으로도 어느 정도 제압 할 수 있는 사람을 몰색했던 것 같아요

(걸어서 따라가신 건가요? 얼마정도?) 한 200m정도?

(혹시 그 여자 분을 피해자로 선택하신 게 제압하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 외모는?) 얼굴이라 이런 건 어두어서 잘 보지 못했구요 돈이 급했으니까 옷차림을 많이 봤었어요

(여자 분이 나이가 얼마나 됐었나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길에서 기다리다가 쫓아가신 거군요?) 예

(그러면 어떻게 집안까지 뒤따라가서 침입하셨나요?) 열쇠로 현관문을 열더라구요 혼자 산다는 느낌을 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문에서 제압하고

(혹시 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있으면 초인종을 눌렀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다가 강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방에서 보니까 나이라도 젊고 단 둘이 있고 분위기가 무의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적으로 매력이 있었나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차장이라고 했었죠?) 네

(그건 어떻게?) 마찬가지로 장충동처럼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마침 차 한 대가 옆을 속 지나가면서 내리더라구요. 시동끄고 차를 들여다 보니까 여자더라구요. 그래서 목표로 삼고 차에서 내릴 때 달려가서

(이때도 밤?) 예 그땐 새벽

(그럼 돈을 뺀 건 어디서?) 차 안에 끌고가서

(그럼 강간은 어떻게?) 차 안에서. 그땐 장충동에서 한번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습관처럼 그렇게 되버렸다고 할까. 저도 모르게 그런 단계식으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강도간간 이후에는 그렇게 되고?) 예... 말씀드리기 뭐한데 강도이후에 절차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강도를 할 때 성적은 매력을 고려하나요?) 아뇨 일산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다. 일단 여자 제가 힘으로 제압을 해야되니까. 그리고 돈 좀 있어보이는 여자 (다른 분들도? 연희동, 일산, 서대문 다?) 예 마찬가지로 얼굴이나 그런 걸 본 게 아니고 느낌상 내가 쉽게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 기준에 맞췄던 거 같습니다. (장충동에서는 끝나고 강간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사건들도?) 예 (저항같은 건 안했나요?) 네 당시에 칼들 들고 있어서

<사례 13>

V. 결론

술이나 놀이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접근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정한 대상을 정하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우연히 발생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즉, 특정의 피해자를 미리 선택하였다기 보다는 가해자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기회로 성범죄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유흥업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라는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게 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범행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특성보다는 건물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상황과 더 많은 관련이 있었다. 피해 여성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범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문이 열려있는 등 침입하기 용이한 상황이 집을 선택하여 침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길에서 납치하거나 바로 공격하는 경우 역시 피해자를 선택할 때 피해자의 특성(외모, 옷차림 등)에 따라 범행대상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범행당시의 상황(어두운 골목, 늦은 시간, 감시자 부재, 열린 문 등)에 따라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성적인 매력 등의 외모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쉽게 제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성폭력 범죄자들이 자신의 환상 또는 왜곡된 인지를 통해 형성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설명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을 목표물로 삼아 미리 선택하고 준비한다는 논의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목표로 하는 피해자의 특성이 있으며, 범죄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피해자를 미리 물색하여 접근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보다는 상황적이고 기회적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일부 사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성적인 충동이 생기거나 강해지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거나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러한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적 변수 및 인구 취약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성폭력 예방 대책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이건학 외, 2016).

한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2차 피해중 하나가 성폭력 발생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양동옥 외(2012)는 ‘피해자 폄하 이론(victim precipitation theory)’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음주량 등 피해자의 행위 또는 태도가 성범죄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김은지·박지선(2011)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 남녀 차별적인 시각이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정원·김혜숙(2012)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간 피해자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판단하는 문화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 연구들은 성폭력 범죄의 책임이 피해자에 기인한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각이 선형적으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을 뿐 실제 피해자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피해자 책임론에 대해 단순히 규범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책임론 비판의 정당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즉, 이른바 ‘피해자의 야한 옷차림’, ‘성적 매력’ 등은 성범죄자들의 대상 선택 기준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같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은 성폭력 범죄를 유발할 요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결론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론이나 성범죄 발생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다루었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피해자들 미리 정하여 일관적 기준으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들이 접근 가능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성범죄의 전체 과정 중 극히 일부인 ‘구체적인 피해자를 선택하는 순간’이다. 즉, 범행성향 형성 단계, 범죄동기 형성단계, 범죄장소 모색단계, 범죄상황 선택단계, 피해자 선택단계, 범행방법 선택단계 등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는 다양한 단계로 세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고유한 설명 방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범행성향 형성단계 또는 범죄동기 형성단계에는 성폭력 범죄자의 유형론이 적합할 수 있으며, 범죄장소 모색단계 또는 범죄 상황 선택단계에서는 일상활동이론 등이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선택단계에서는 상황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 발견법’, ‘일상활동이론’, ‘프로파일링 방법’ 등 성범죄자의 피해자 선택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수 있으며²⁾, 이러한 측면에서 성범죄자들의 선택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다루지 못한 것은 이 글의 한계일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들을 포함한 범죄자들의 피해자 선택의 논리는 향후 더욱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같은 논의들은 범죄 예방 정책, 피해자 보호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일레로 조윤오(2015)는 보르가드 외(Beauregard, et al., 2007)이 제안한 합리적 선택 발견법(Rational Choice Heuristic)을 따라 성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과정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시도하였다. 합리적 선택 발견법은 범죄자가 범죄를 결심하게 되는 일련의 사고과정 및 절차를 하나의 틀로 제시한 것으로(Petrosino & Brensilber, 2003; 조윤오, 2015 재인용), ‘범죄자가 갖고 있는 일상활동 차원의 특징’, ‘피해자가 갖고 있는 일상활동의 특징’, ‘피해자 모색장소’, ‘피해자 선택’, ‘피해자 접근방식’, ‘공격 장소 선택’, ‘피해자 이동방법’,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 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자의 선택 과정을 기술하는 것을 제안한다(조윤오, 2015). 이 모델에 따라 조윤오(2015)는 서울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범죄자 114명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 고선영·양종희·이수정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117-146.
- 공미혜 (2006). 지적장애여성의 성적 장애요인과 성교육. *여성연구논집*, 17:63-91.
- 곽민영 (2007).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김유경·김정숙·박계림 (2013).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법무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지·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171-183.
- 김지혜·김희주 (2017). 생태체계 관점에서 본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이후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382-395.
- 김태명 (2011).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9:5-44.
- 김현경 (2015). 여성주의 성폭력예방교육의 모색. *한국여성학*, 31(2):55-89.
- 문현주 (2015).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재활복지*, 19(3):1-29.
- 박형민·김지영·김태명 (2013).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II) : 연쇄 성폭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동옥·국혜윤·백현경·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323-345.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이건학·진찬우·김지우·김완희 (2016). 성폭력 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1(6):853-871.
- 이동명·정규진 (2013). 성폭력범죄자의 범죄학적 고찰. *법학연구*, 49:367-386.
- 이유진 (201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연구, *교정담론*,

7(1):165-190.

이정원·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47-73.

장다혜 (2012). 성폭력 범죄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신화들. *여성이론*, 27:222-235.

전영실·강은영·박형민·김혜정·황대정·정유희 (2007).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운오 (2015). 성범죄자들의 피해자 선택 특징에 관한 프로파일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1):157-184.

주소희 (2010). 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생존자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2, 33-68.

허경미 (2009). 강간범의 성적 태도 및 심리에 관한 연구. *젠더와 문화*, 2(1):97-124.

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건학·진찬우·김지우·김완희 (2016). 성폭력 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1(6):853-871.

Beauregard, E., M. F. Rebocho (2010). Target selection patterns in rape, *Journal of Investigative*, 7:137 - 152.

Beauregard, Eric, D. Kim Rossmo, & Jean Proulx (2007). A Descriptive Model of the Hunting Process of Serial Sex Offenders: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449 - 463

Canter, D., P. Larkin (1993). The environmental range of serial rapis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63 - 71.

Daphne J. Sim, Michael Proeve (2010). Crossover and stability of victim type in child molester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5:401 - 413.

Deslauriers-Varin, N., E. Beauregard (2010). Victims' Routine Activities and Sex Offenders' Target Selection Scripts: A Latent Class Analysi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 Treatment*, 22(3): 315-342.

- Goodwill, A. M., L. J. Alison (2007). When is profiling possible? Offense planning and aggression as moderators in predicting offender age from victim age in stranger rap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5:823 - 840.
- Guay, Jean-Pierre, Jean Proulx, Maurice Cusson, & Marc Ouimet (2001). Victim-Choice Polymorphia among Serious Sex Offende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0(5): 521-533.
- Lundrigan, S., S. Czarnomski, & M. Wilson (2010). Spatial and environmental consistency in serial sexual assault.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7:15 - 30.
- Rebocho, M. F., P. Silva (2014). Target selection in rapists: The role of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facto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1):42-49.
- Stevens, D. J. (1994). Predatory rapists and victim selection techniqu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31(4):421-433.
- Worling, J. R. (2001). Personality-Based Typology of Adolescent Male Sexual Offenders: Differences in Recidivism Rates, Victim-Selection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Victimization Histories, *Sex Abuse: A Journal of Research & Treatment*, 13(3): 149 - 166.

The Victim Selection of Sexual Offender

Bark, Hyung-min*

This study researched the criteria that criminals select victims from their perspective, or the factors that consider the moment of selection. For this research, 22 sexual offenders who committed more than one sex crime were interviewed. And among the interview contents, clues indicating the victim selection were extracted, and analyzed. The type of approaches to victims were ‘interactions through alcohol’, ‘interaction through play’, ‘selecting women in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invasion of victims’ house’, ‘random choice’. The most important trigger for selecting victims for each type was not their traits, such as appearance or clothing. The situation at the moment of the crime were more important, such as ‘the victim was alone’, ‘Ease of intrusion’, ‘Ease of controlling victims’. These results could be a valid empirical evidence of criticism against the responsibilities on sexual violence victims that one of the most serious secondary injuries for victims. The study also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policies to prevent sexual crimes and protect victims of sexual violence.

❖ Keyword: sexual offender, victim selection, traits of victim, situational characteristics, victim responsibilities

투고일 : 5월 31일 / 심사일 : 6월 21일 / 게재확정일: 6월 21일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Fellow